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72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따른 단기근로자 대상 자체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고, 정전기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준수를 자체점검대장 서식에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한 화학안전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방법 같음(안 제31조의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가 제공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표시로 고지방법을 같음하도록 규정

나. 수급인 대상 단기근로자의 안전교육 합리화(안 제37조제5항, 별표 6의3, 별표 6의4)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 중 단기근로자에 해당하는 취급담당자에 대하여 현행 16시간의 안전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고, 업무 수행 전 실시하는 수급인 등 자체교육의 내용·방법 등 이행기준을 구체화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서식 정비(안 별지제42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서식에서 인화성 물질 취급시설 등에 대한 정전기 제거 조치 적절성 확인을 명확히 하고, 그 외 서식 문구를 정비

3. 의견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chinddong1@korea.kr
- 팩스 : 044-201-6830 (전화 044-201-6832)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따른 단기근로자 대상 자체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고, 정전기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준수를 자체점검대장 서식에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한 화학안전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방법 같음(안 제31조의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가 제공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표시로 고지방법을 같음하도록 규정
나. 수급인 대상 단기근로자의 안전교육 합리화(안 제37조제5항, 별표 6의3)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 중 단기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담당자에 대하여 현행 16시간의 안전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고, 업무 수행 전 실시하는 수급인 등 자체교육의 내용·방법 등 이행기준을 구체화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서식 정비(안 별지제42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서식에서 인화성 물질 취급시설 등에 대한 정전기 제거 조치 적절성 확인을 명확히 하고, 그 외 서식 문구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진열·보관하여”를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진열·보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통신판매”를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통신판매”로 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같은 법 제10조제8항 또는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할 것

제3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영 제1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를 연속하여 수행하는 기간이 2개월 이하인 사람(이하 “단기근로자”라 한다)에

계는 업무 수행 전에 30분 이상 해당 업무에 관하여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1회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인정 기준 및 교육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의3 제3호의 교육시간란 중 “운반하는 자는”을 “운반하는 자 및 단기근로자는”으로 한다.

비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호의2 및 제3호 중 “운반하는 자는”을 “운반하는 자 및 단기근로자는”으로 한다.

별표 6의4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단기근로자(제37조제5항)

교육내용
가. 해당 작업·시설 관련 화학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취급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인체·환경 영향 및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개인보호구 등에 관한 사항
다. 화학사고 시 해당 건물 내·외 대피 경로 및 응급조치, 개인보호구 위치 등에 관한 사항
라. 작업 장소 주변의 위험요인 및 안전수칙 등에 관한 사항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양식)				
점검연월일	점검시간 (00:00 ~ 00:00)	소속	점검자성명	서명

점검 항목	이상 유무	비고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부식·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 이송배관, 접합부, 밸브, 보관·저장설비 등	[] 문제없음 [] 해당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②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문제없음 [] 해당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③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문제없음 [] 해당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④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변형·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문제없음 [] 해당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⑤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 문제없음 [] 해당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⑥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문제없음 [] 해당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⑦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문제없음 [] 해당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⑧ 자연발화성 물질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문제없음 [] 해당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⑨ 정전기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인화성 물질 취급시설 등)에 대해 접지 등의 정전기 제거 조치가 정상상태를 유지하는지 여부	[] 문제없음 [] 해당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⑩ 누출검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 문제없음 [] 해당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⑪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 문제없음 [] 해당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⑫ 방류벽, 트렌치(도랑 형식의 배수설비) 등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 문제없음 [] 해당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 작성방법

1. 비고란에는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된 사항 또는 재점검이 필요한 사항과 그 예정일을 적습니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하려는 자는 양식의 점검 항목이 모두 포함된 별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점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하는 내용을 유해화학물질등의 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를 제공(전자문서를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추가로 알려야 한다.		제31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 ----- ----- ----- ----- ----- ----- ----- ----- ----- -----.		
<u><신 설></u>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같은 법 제10조제8항 또는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할 것		
1. <u>진열 · 보관하여</u>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u>진열 · 보관하여</u> ---		

2.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 ④ (생략)
<신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6의4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통신판매----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영 제1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연속하여 수행하는 기간이 2개월 이하인 사람(이하 “단기근로자”라 한다)에게는 업무 수행 전에 30분 이상 해당 업무에 관하여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1회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인정기준 및 교육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 제3항, 제4항 및 제5항-----

----.

⑦ ----- 제5항까지-----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 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1. ~ 3. (생 략) ⑦ (생 략)	----- ----- --. 1. ~ 3. (현행과 같음)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

조문별 개정 이유서

1.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방법 같음(안 제31조의2)

가. 개정 이유

- 타 법령에 따라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제품의 경우 「화학물질 관리법」상 중복 표시·제공을 방지하기 위함

나. 개정 내용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된 제품은 해당 표시로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고지방법을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 제공 체계의 효율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2. 수급인 대상 단기근로자의 안전교육 합리화(안 제37조 제5항, 별표 6의3, 별표 6의4)

가. 개정 이유

- 작업환경이 수시로 바뀌는 단기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함

나. 개정 내용

-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 중 단기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 담당자에 대하여 현행 안전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고, 업무 수행 전 실시하는 수급인 교육의 내용·방법 등 이행기준 구체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교육 실효성 및 화학사고 예방 역량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서식 정비(안 별지 제42호 서식)

가. 개정 이유

- 정전기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준수를 자체점검대장 서식에 명확히 하기 위함

나. 개정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별지 제42호)에 접지 상태를 확인하는 등 정전기 제거 조치 적절성 확인 항목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인화성 물질의 정전기 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한 화학안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6 . 7 . 6 .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